

의안번호	제 74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기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5월 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43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일
발 의 자 :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연종석

1. 제안이유

주5일 근무 확대로 인한 관광 수요 증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치유,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령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도민 우선예약제를 확대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 우선예약제 확대 운영(안 제11조)

- 현행 20% → 개정안 40%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안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1조)

다. 별표 1, 별표 2 구분의 “산림휴양관”을 “무궁화관”으로 명칭 변경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라. 조례안 예고 : 2021. 5. 20. ~ 2021. 5. 26.(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전일(前日)”을 각각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수하는”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국·공·사립”을 “국립·공립·사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를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를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충청북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개·보수”를 “개수·보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납입하거”를 “납부하거”로, “성립된”을 “이루어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용일로”를 “사용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별표3” 을 “별표 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 할” 을 “않을” 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별표3” 을 “별표 3”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여서는 아니” 를 “해서는 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21조 중 “아니한” 을 “않은” 으로 한다.

별표 1 기호(□) 구분의 산림휴양관란 “산림휴양관” 을 “무궁화관” 으로 한다.

별표 2 구분의 숲속의집, 복합휴양관, 산림휴양관란 중 “산림휴양관” 을 “무궁화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주말”이란 <u>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u>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p> <p>3. “주중”이란 <u>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u>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p> <p>4. (생 략)</p> <p>5. “시설사용료”란 <u>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u>을 말한다.</p> <p>6. (생 략)</p> <p>7.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란 <u>국·공·사립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예약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u>을 말한다.</p> <p>8. (생 략)</p>	<p>제3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전날</u>----- ----- ---</p> <p>3. ----- ----- <u>전날</u>----- ----- --.</p> <p>4. (현행과 같음)</p> <p>5. ----- ----- ----- <u>받는</u> -----.</p> <p>6. (현행과 같음)</p> <p>7. ----- <u>국립·공립·사립</u>----- ----- ----- -----.</p> <p>8. (현행과 같음)</p>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0. ~ 13. (생략)

14. “명예도민”이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수여자를 말한다.

15. ~ 17. (생략)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조령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휴관일) ① (생략)

②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생략)

제7조(이용시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특별히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9.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10. ~ 13. (현행과 같음)

14. -----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
-----.

15. ~ 17.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

제6조(휴관일)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제8조(입장제한) -----
----- 대
해서-----.

1. ~ 5. (생 략)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③ (생 략)

제10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
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생 략)
2. 시설의 개·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생 략)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 략)

제11조(예약신청 및 성립) ① (생
략)
② 도민 및 도내 소재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재직자는 숙박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예약자 명의로 예약일의 다
음 날 23시 50분까지 도에서 지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 별표 1-----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개수·보수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약신청 및 성립) ① (현
행과 같음)
② -----
----- 40퍼센트 -----
-----.

③ -----

정한 계좌에 예약금을 전액 납입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④ (생략)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2.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3.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면제

4. ~ 6.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위약금 처리) ① (생략)

----- 납부하거-----

----- 이루어진 -----.

----- 사용일-----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
----- 경우: --

2. -----
----- 경우: --

3. -----
----- 경우: --

4. ~ 6.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2-----
--.

제13조(위약금 처리) ① (현행과

② 관리자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와 승인 또는 허가 없이 매매, 교환하여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③ (생략)

④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4조(환불처리) ①·② (생략)

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6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같음)

② -----

----- 별표 3-----

-----.

③ (현행과 같음)

④ -----

않을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환불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표 3-----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이용객 준수사항)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유
지를 저해하는 행위는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을 환
불하지 아니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유
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
용한다.

5. -----

----- 해서
는 안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는다.

제17조(손해배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는다.

1.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준용) -----
않은 -----

-----.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